

\* 원안은 대두국시정판에  
보관할 원본대조필  
다. 민청행정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개발30415-577	(전화: 697-9924)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정인경.	
시행일자	86. 12. 27		
보조장 조기판	경계 관내과장 관내1계장	협조기관 민청행정관	문서용제 검열 1986.12.27 발송인
기안책임자	문종실	발신명의	발송인 1986.12.27
경유 수신 참조	제 1 안 내 부 결 제		
제 목	1단지 국민주택 규모초과 장기 체납자에 대한 조치		
1. 당사에서 건설하여 분양한 목동신시가지 1단지 국민주택 규모초과 아파			
트룸 입주금을 장기 체납하고 있는 11세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코져 합니다			
가. 장기 체납세대수 : 11세대 (현황 : 별첨)			
나.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 1. : 중도금 체납자에 대한 납입 촉구</li> <li>○ 85. 9. : 분양금</li> <li>○ 85.10.7. : 입주안내 (입주안내문 발송) 지방행정주사</li> </ul>			
6.10. : 1단지 미입주자에 대한 입주 촉구 통보			
원안은 대두국시정판에 보관할 원본대조필 다. 민청행정			115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p>	
<p>· 제1항 : 계약은 중도금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p>	
<p>· 제4항 :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 제4호 : 계약조건등</p>	
<p>○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차 분양계약서</p>	
<p>· 제1조 제3항 : "을"이 입주금 (중도금 및 잔금)을 기입내어 납부치 않을 때에는 "갑"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거나 금융단 협정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할수 있다</p>	
<p>· 제11조 제1항 : "갑"은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p>	<p>일 단 조 필</p>
<p>마. 조치의견</p>	<p>지방행정주사 고 광 호</p>
<p>○ 86.6월에 분양계약한 2세대 (잔금납입기한: 86.10.31)를 제외한 9세대는 잔금납입기한 (85.12.17.까지)으로 부머 1년이 경과되었으며</p>	
<p>○ 수차의 체납독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기 체납을 하고 있으므로 계약의무이행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일간신문에</p>	

공고하되 단 87.1.31.까지 계납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본양계약 해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6.6월에 본양계약한 2세대에 대하여는 87.1.31. 까지 계납금을 납부토록 독촉하고 계속하여 계납할 경우에는 상기 9세대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치코겨 합니다</li> </ul>	
<p>마. 계약 해제자에 대한 본양금 환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및 중도금을 납부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을 당시에 귀속조치하고</li> <li>· 중도금 납입액중 관리비를 공제한 잔액을 계약자에게 환불</li> </ul> </li> <li>○ 계약금만 납부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은 당시에 귀속조치하고</li> <li>· 관리비는 현실적으로 주장이 불가하므로 난방및 급탕비는 고지 면제 조치하고 일반 관리비및 공동전기료는 당시에서 부담</li> </ul> </li> </ul>	
<p>바. 공고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시 : 86.12</li> <li>○ 규 격 : 4단 8cm      지방행정주사      고      광</li> <li>○ 게재신문 : 2개 일간지 (조간1, 석간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과목 : 목.신청개발비,사무비,사무관리,수용비및 수수료</li> </ul>	

117  
 117  
 117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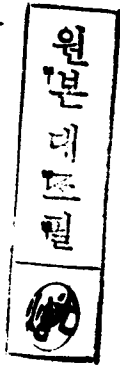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예산 : 1 ( 76,960원</li> </ul>
<p>17,140원 x 4단 x 8cm x 2개사 = 1,096,96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방법 : 청구에 의하여 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문 9안) : 별첨</li> </ul>
( 제2안 )
수신 시장
참조 공보관
제목 신문 광고의뢰
1. 목동신시가지 1단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중 분양금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의뢰 하오니 광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고일시 : 86.12 <span style="float: right;">☺</span>
나. 규 격 : 4단 8cm
다. 게재신문 : 2개 일간지 (조간1, 석간1)
마. 공고문(안) : 별첨
지방행정주무관 김 광 
첨부 공고문 1부.
( 제3안 )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체납금 납입촉구

원  
 대  
 조  
 필  


<p>1. 귀하가 당사와 본양 계약 체결한바 있는 목동신시가거 국민주택규모</p>
<p>초과 아파트 입주금에 대한 납입기한이 장기간 경과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납부</p>
<p>하지 않고 있는바 체납금에 대하여는 87.1.31.까지 <sup>고압주거비</sup>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위기간까지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부득이 본양계약서</p>
<p>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양계약을 해제조치 할것임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p>
<p>기 바랍니다</p>
<p>수신처 강서구 화곡1동 379-96 임 성 남</p>
<p>구로구 독산2동 1045-21 윤 인 석</p>
<p style="font-size: 2em;">원 본 의 조 필</p>
<p>지방행정주사 고 광 렬</p>
<p style="font-size: 1.5em;">11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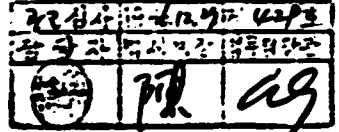
**계 남 자 현 팽 (1단지)**  
-----

평 형	동 호 수	성 명	주 소	계납연황
35E	118-1406	석 대 경	동대문구 장안2동 338-1 28/3	4차 중도금 잔금
"	119-806	서 철 수	영등포구 신길6동 4775 우진아파트 10-10	1,2,3,4차 중도금 잔금
"	123-301	김 동 환	강남구 반포2동 235 한신신반포2기구 113-1012	2,3,4차 중도금 잔금
45A1	106-102	최 운 상	강서구 화곡4동 820-17 5/10	잔금
45C	127-804	신 일	은평구 녹번동 120-79 10/5	1,2,3,4차 중도금 잔금
"	130-604	고 현 종	강남구 대치2동 66 상용아파트 3-1502	
58A	120-705	박 혜 상	강동구 암사1동 498-17 22/7	
58B	120-107	전 통 범	영등포구 여의도동 37-2 미성아파트 13-208	
"	126-502	임 길 수	강남구 도곡동 369-1 주사 국공아파트 304-603	고 광 현
45C	116-204	운 인 석	구로구 독산2동 1045-21 17/6	1,2차 중도금 잔금(86.6.27.계약)
"	121-1104	임 성 남	강서구 화곡1동 379-96	2차 중도금 잔금(86.6.3계약)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목동신시가지 1단지 분양계약 해제 공고 (안)



1. 서울특별시에서 건설하여 분양한 목동신시가지 1단지 국민주택규모호과 아파트용 <sup>12층이</sup> ~~아파트용~~ 입주금을 장기 <sup>한 분양계약에 의거</sup> ~~납입하여~~ 분양계약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sup>판공</sup> ~~분양계약을 해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87.1.31.까지 납입금을 완납하는 세대는 계약해제 대상에서 제외) <sup>가려지</sup> ~~판공~~  
 2. 분양계약자에 대하여는 <sup>가려지</sup> ~~제발~~ 동지할 것이나 <sup>가려지</sup> ~~피수권자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려지 ~~가려지~~ 합니다.~~

1986. 12

서울특별시장 엄보환

1. 사업주의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백령로 1가 31 : 서울특별시장
2. 아파트명 : 목동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 (국민주택규모호과)
3. 분양계약 해제 동호내역

평형	동호수	계약자	평형	동호수	계약자	평형	동호수	계약자
35E	118-1406	석대경	45A1	106-102	최은상	58A	120-705	박영상
35E	119-806	서철수	45C	127-804	신 일	58B	120-107	권영철
35E	123-301	김동환	45C	130-604	고현중	58B	126-502	김길수

4. 분양금 환불
  - o 계약금은 당시에 귀속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분양금 중에서 <sup>관리비</sup> ~~관비~~ 환불 <sup>판공</sup> ~~판공~~ 금액한 잔액을 계약자에게 환불
  - o 환불장소 :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 <sup>개발</sup> ~~개발~~ 행정주사 고광 <sup>판공</sup> ~~판공~~ 관리과 (697-9924)

내즈빌

서울특별시 공고 제 9

특동신시가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공고 (안)

1. 서울특별시장이 건설하여 분양한 특동신시가지 1단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중 입주금을 장기 체납한 분양계약자에 대하여 분양계약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계약을 다음과 같이 해제 (단, '87.1.31.까지 체납금을 완납하는 세대는 계약해제 대상에서 제외)함을 공고합니다
2. 본계약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해제 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가롭합니다

1986. 1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주의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백평로 1가 31

서울특별시장

2) 아파트명 : 특동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 (국민주택규모초과)

3) 분양계약 해제 동호내역

평형	동호수	계약자	평형	동호수	계약자	평형	동호수	계약자
35E	118-1406	석대경	45A1	106-102	최은상	58A	120-705	박태상
35E	119-806	서철수	45C	127-804	신 일	58B	120-107	김동환
35E	123-301	김동환	45C	130-604	고현중	58B	126-502	김필수

4) 분양금 환불

○ 계약금은 당시에 귀속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분양금 중에서 관리비를 제외한 잔액을 계약자에게 환불

○ 환불장소 : 서울특별시 특동지구개발사업소

관리과 (697-9924)

지방행정주사 고 광